

「테러방지법」과 국제적 공조 체제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Act on Anti-terroris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권 정 훈*

차 례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을 하는 경찰·해양경찰·군·소방의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대테러시스템 운영적 구조와 관련하여 「테러방지법」과 국제적 공조 체제를 주요 요인으로 한정하여 이의 인식을 통해 대테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과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상 성별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과 비중 등을 고려한 성비의 적절한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력의 경우 10

년 미만인 144명(70.6%)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경력이 높은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인사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방지법」과 관련하여 법령 체계 및 형식에 관한 논의보다 내용 및 기능에 관해 동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인권보호관과 대테러 조정 통제기관에 관한 역할과 권한을 통하여 대테러 기능 및 역할 등의 강화 및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에 따라 향후 「테러방지법」 개정 시 이를 참고로 한 적절한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제적 공조 체제의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 충남도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났다. 특히 항공 및 국경 보안에 대한 국제 필요성은 매우 높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적 공조와 실시간 테러 관련 정보 취합의 나타났다.

◆ 주제어 : 테러리즘, 대테러시스템, 「테러방지법」, 국제적 공조 체제, 대테러 종사자

I. 서론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테러’가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삶의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정비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방지법안 논의 시작 14년 4개월 만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고 한다)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대테러관리의 패러다임을 변환시킬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채 현행 법제로는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 테러발생에 따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몇몇 조항들의 미흡한 면이 적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테러방지법」의 개정 및 보완 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16년 국내외 테러의 위협 양상 및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테러단체 이라크-알샤ם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 : ISIS)의 온라인상 테러선동 강화, 둘째, ISIS의 동남아시아 진출, 셋째, 우리나라에 대한 ISIS의 테러 위협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 재외국민 및 해외여행자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의 범죄 등 사건사고 발생

으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범죄의 물리적·공간적 제약의 붕괴, 범죄수법 공유 등으로 범죄의 탈국경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피해 규모 및 파급 효과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¹⁾ 이러한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테러 관련 분야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세계 각국 정보기관과의 협업·조율을 위한 공조 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을 하는 경찰·해양경찰·군·소방의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대테러시스템 운영적 구조를 위한 주요 요인 중 「테러방지법」과 국제적 공조 체제에 한정하여 이의 인식을 통해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문헌분석의 내용분석에 대해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 연구방법을 설계한 후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주요내용은 첫째,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

1) <https://www.police.go.kr/files/infodata/200135/2017/2017061.pdf>(2019. 3. 23. 검색).

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하고(제2조), 둘째,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두며(제5조), 셋째,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둔다(제6조). 넷째,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두고 있다(제7조).

「테러방지법」과 관련하여 임승찬(2019)은 ‘테러’,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의 개념 정의를 국민의 기본권 제한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재정의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의 중복을 피하고 외국 정보기관과 국제 공조가 수평적으로 수행되도록 미국식 정보공동체 구성이나 국내보안정보부 설치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²⁾

이주락·최연준(2017)은 권한의 남용 및 인권침해 요소와 관련한 정보 수집 활동의 투명화, 목적 및 개념 정의와 관련한 법률의 명확성 확보, 인권보호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한 통제장치 및 책임 소재의 명확화를 제시하였다.³⁾

오경식(2016)은 테러의 개념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테러 개념의 재설정, 기존의 다른 법률체계와 다른 다양하고 실질적

2) 임승찬, “테러방지법과 국가 테러대응체계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119-121쪽.

3) 이주락·최연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효과적 운용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테러학회보, 제10권 제3호, 한국테러학회, 2017, 44-49쪽.

이고 강력한 「테러방지법」 목적의 재설정, 적극적 테러 예방과 대응조치를 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범위 설정을 위하여 테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의 재설정, 테러 개념의 불명확성, 테러단체의 개념의 불명확성,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의 불명확성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관련한 인권보호 장치의 명확화 요구를 제시하였다.⁴⁾

유영현·김종길(2016)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간의 역할 정립과 협조관계 등의 설정, 테러정보통합센터를 통한 국제 테러단체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과 공유 그리고 각 부처간 협조체계 확립,⁵⁾ 테러 용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변호인의 제척 및 접견권의 제한 등 규정 마련, 외국인의 영장 없는 구속, 수사기관이 감청한 외국정보 관련 정보를 다른 정보 관계기관에 제공 등과 같이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⁶⁾

한희원(2016)은 테러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 인권보호관, 관계기관 장의 임무와 역할 관련 테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정보 수사기관의 대테러활동, 테러용의자 등 처벌과 행정규제,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정보활동의 변화를 제시하였다.⁷⁾

-
- 4) 오경식, “한국의 테러방지법제의 분석과 개선방안”, 국가정보연구, 제9권 제2호, 한국국가정보학회, 2016, 217-221쪽.
 - 5) 윤민우·윤해성, “미국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법집행 및 정보활동에 대한 사례 연구”, 가천법학, 제8권 제4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73쪽.
 - 6) 유영현·김종길,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대테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한국테러학회보, 제9권 제4호, 한국테러학회, 2016, 18-19쪽.
 - 7) 한희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16권 제4호(통권 제64호), 한국법학회, 2016, 359-369쪽.

박호현·김종호(2016)는 테러 예방 및 대응의 내용들 외에도 테러조직에 대한 대응체계 그리고 테러에 대한 수사, 처벌, 인권보호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테러방지법」 목적의 재설정, 테러의 개념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를 변화시킬 법률 규정의 명확성과 구체성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분야별, 테러에 대한 장비와 기술개발 등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분야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테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국민이 가진 기본권의 근본적 침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법률에 의한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른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⁸⁾

2. 국제적 공조 체제

테러근절을 위한 국제공조를 결의하기 위하여 국제기구⁹⁾는 국제 관계의 테러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우선 국제법은 UN에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의 타협과 해결을 위해 193개의 가입국이 참여하여 국제분쟁 사항에 대한 정책 의결 및 권리헌장을 설정하였다. UN은 1994년 UN총회에서 최초로 테러리즘의 정의를 도입, 국제 테러리즘 제거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였고, 2002년 UN공동성명에서 테러 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결정으로 UN조약의 테러리즘 정의를 규정하였다. 이후 2004년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테러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테러리즘 정의를 결

8) 박호현·김종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제18권 제3호, 한국경찰학회, 2016, 86-91쪽.

9) 국제기구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 UN)과 이슬람 협력기구(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 OIC)로 구분한다.

의하여 UN결의안으로 테러리즘의 정의를 채택하였다.

한편, 이슬람법은 OIC에서 “이슬람제국의 하나된 목소리”로 56개 가입국(약 16억 인구)의 안녕과 질서유지·화합을 위해 이슬람 총회를 개최하여 법과 정책을 결정하였다.

OIC는 테러리즘의 정의에서 테러리즘의 구성요소를 “조직범죄, 마약 밀매, 부정부패, 자금세탁, 인신매매에 대한 전쟁의 협력”함을 법규로 명시하였고, 1999년 이슬람 56개 가입국 간의 테러리즘의 정의에 합의하면서 “국제 테러리즘 전쟁”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다만, OIC의 국제 테러법상 예외조항을 두어 범죄행위를 명시하였다.¹⁰⁾

두 국제기구는 존재가치 성격의 상이성이 존재함에 따라 UN 국제법의 경우 인류평화를 위한 법으로 인류의 평등과 인간존엄이 신의 존재보다 우위에 있는 반면, OIC 법률의 경우 인간은 신에 귀속된 존재로서 신의 존재가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위에 있다. 따라서 종교적 규범을 따라 OIC 관습법을 제정함으로써 테러에 대한 근본적 시각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두 국제기구는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통하여 국제적 공조 체제를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 공조 체제와 관련하여 이만중(2017)은 ISIS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조직 척결을 위해서는 테러 정보교환과 같은 국제공조가 요구되기에 대내외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테러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¹¹⁾

10) 그 내용을 요약하면 공중분쟁에 있어 외국의 주둔, 침략, 제국주의, 헤게모니의 경우 국가의 자유 수호 및 국권결정이므로 국제법상 테러리스트의 범죄행위 요건은 미성립이다(Katja LH Samuel, The OIC, The UN, and Counter-terrorism Law-Making, 2013, pp. 415-585.).

유영현·김종길(2016)은 국민들의 안보·안전 불감증을 불식시키면서 국가 대테러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관계기관 대테러 협업 활성화 및 국제공조 강화, 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¹²⁾

양승돈·오봉욱(2015)은 테러활동 정보 공유 등의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 UN결의안은 한국을 포함한 197개 UN회원국에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며, UN회원국은 외국인 테러전투원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¹³⁾

박주혁·박진희(2015)는 국가 간 공조체계법안 등과 관련하여 향후 초국가적 측면에서 아시아의 테러와 관련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같이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안을 구성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¹⁴⁾

11) 이만중, “IS이후 국제테러정세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비”, 한국테러학회보, 제10권 제3호, 한국테러학회, 2017, 114쪽.

12) 유영현·김종길,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대테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한국테러학회보, 제9권 제4호, 한국테러학회, 2016, 19쪽.

13) 양승돈·오봉욱,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실태 및 국제사회의 공조방안”, 한국테러학회보, 제8권 제4호, 한국테러학회, 2015, 97쪽.

14) 박주혁·박진희, “국내 대테러법안의 쟁점과 기본 방향 -외국의 테러방지법 비교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치안정책연구소, 2015, 322쪽.

Ⅲ. 연구방법

우선 문헌고찰 및 분석을 통하여 「테러방지법」과 국제적 공조 체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도출한다. 이의 경우 최근 발표자료 및 분야별 주요 연구를 중심으로 주요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문헌분석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면담을 위한 설문 초안을 작성하였다.

한편, 「테러방지법」과 국제적 공조 체제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개념화 및 개념 구성 단계를 거쳐 설문지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방법으로써 대테러 관련 학계 교수, 연구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동의를 구해 201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20명), 2017년 12월 04일부터 12월 15일까지(10명) 각 1차, 2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 설문지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와 같은 전문가 면담으로 작성된 설문을 통해 「테러방지법」과 국제적 공조 체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8년 03월 03일부터 2018년 03월 27일까지 경찰·소방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80부를 배포하여 66부를 회수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의 척도 신뢰도와 요인분석을 통하여 설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 본 조사의 설문 구성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변경하였다. 본 조사는 2018년 07월 26일부터 2018년 09월 28일까지 판단추출법에 의하여 경찰·해양경찰·군·소방의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240부를 배포, 204부를 회수하여 85.0%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 방법은 연구자가 본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발적

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대상자들에 한하여 수행하였으며, 직접 배포, 회수하여 진행하였다.

〈표 1〉 본 조사의 설문 구성 및 내용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척도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주요 요인	「테러방지법」	8	5점
	국제적 공조 체제	5	5점
인구통계학적 기본사항	성별, 연령, 소속, 경력, 학력	5	-

설문 분석과 관련하여 기초통계인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소속, 경력, 학력)에 따른 중요도 및 필요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한 평균비교를 해보고자 한다.

IV. 분석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빈도분석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소속, 경력, 학력의 빈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202	99.0
	여성	0	0.0
	무응답	2	1.0
	합계	204	100.0
연령	20대	70	34.3
	30대	82	40.2
	40대	39	19.1
	50대 이상	11	5.4
	무응답	2	1.0
	합계	204	100.0
소속	경찰(해양경찰 포함)	59	28.9
	소방	80	39.2
	군	63	30.9
	무응답	2	1.0
	합계	204	100.0
경력	5년 미만	90	44.1
	5~10년 미만	54	26.5
	10~15년 미만	30	14.7
	15년 이상	26	12.7
	무응답	4	2.0
	합계	204	100.0
학력	고졸 이하	83	40.7
	전문대졸	54	26.5
	대학교졸 이상	62	30.4
	무응답	5	2.5
	합계	204	100.0

2) 인구통계학적 특성 시사점 및 함의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설문응답자 중 여성은 부재하고, 남성이 100.0%였다. 이는 대테러 업무 수행에서 여성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비율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과 비중 등을 고려한 성비의 적절한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령의 경우 대테러 관련 업무의 특성으로 20대와 30대가 152명(74.5%)을 차지하였다. 대테러 관련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소속의 경우 경찰(해양경찰 포함) 57명(28.9%), 소방 80명(39.2%), 군 63명(30.9%)으로 소속별 설문지 배포를 고려한 결과 소속이 편중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력에 경우 5년 미만 90명(44.1%), 5~10년 미만 54명(26.5%)으로, 10년 미만 144명(70.6%)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관료제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활동경력이 높은 비율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더라도 대테러 관련 특성상 직무의 노하우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경력에 따른 노하우 및 대테러 기술의 전수 및 활동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이는 연령에서 일정 부분 파악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력이 높은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인사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 83명(40.7%), 전문대졸 54명(26.5%), 대학교졸 이상 62명(30.4%)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테러방지법」 빈도분석

「테러방지법」의 설문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의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테러방지법」 빈도분석 결과

문항	설문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합계		
1	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0 (0.0)	3 (1.5)	62 (30.4)	90 (44.1)	49 (24.0)	204 (100.0)	3.91	0.773
2	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및 관련 하위 법령의 규정을 통일화해야 한다.	0 (0.0)	6 (2.9)	59 (28.9)	89 (43.6)	50 (24.5)	204 (100.0)	3.90	0.808
3	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테러 개념의 목적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0 (0.0)	1 (0.5)	58 (28.4)	97 (47.5)	48 (23.5)	204 (100.0)	3.94	0.734
4	테러단체 지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	1 (0.5)	4 (2.0)	50 (24.5)	98 (48.0)	51 (25.0)	204 (100.0)	3.95	0.786
5	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북한 테러행위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0 (0.0)	9 (4.4)	52 (25.5)	89 (43.6)	54 (26.5)	204 (100.0)	3.92	0.833

문항	설문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합계		
6	대테러 조정 통제 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1 (0.5)	6 (2.9)	56 (27.5)	77 (37.7)	64 (31.4)	204 (100.0)	3.97	0.867
7	대테러 인권보호 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1 (0.5)	6 (2.9)	53 (26.0)	83 (40.7)	61 (29.9)	204 (100.0)	3.97	0.850
8	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령상 사회재난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 (0.5)	5 (2.5)	51 (25.0)	78 (38.2)	69 (33.8)	204 (100.0)	4.02	0.856

“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설문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동의함 90명(41.4%), 보통 62명(30.4%), 매우 동의함 49명(24.0%), 동의하지 않음 3명(1.5%) 순으로, 평균값은 3.91로 나타났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관련 하위 법령의 규정을 통일화해야 한다.”라는 설문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동의함 97명(47.5%), 보통 58명(28.4%), 매우 동의함 48명(23.5%), 동의하지 않음 1명(0.5%) 순으로, 평균값은 3.94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테러 개념의 목적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문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동의함 97명(47.5%), 보통 58명(28.4%), 매우 동의함 48명(23.5%), 동의하지 않음 1명(0.5%) 순으로, 평균값은 3.94로 나타났다.

“테러단체 지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설문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동의함 98명(48.0%), 매우 동의함 51명(25.0%), 보통 50명(24.5%), 동의하지 않음 4명(2.0%), 전혀 동의하지 않음 1명(0.5%) 순으로, 평균값은 3.95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북한 테러행위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라는 설문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동의함 89명(43.6%), 매우 동의함 54명(26.5%), 보통 52명(25.5%), 동의하지 않음 9명(4.4%) 순으로, 평균값은 3.92로 나타났다.

“대테러 조정 통제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설문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동의함 77명(37.7%), 매우 동의함 64명(31.4%), 보통 56명(27.5%), 동의하지 않음 6명(2.9%) 순으로, 평균값은 3.97로 나타났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설문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동의함 88명(40.7%), 매우 동의함 61명(29.9%), 보통 53명(26.0%), 동의하지 않음 6명(2.9%), 전혀 동의하지 않음 1명(0.5%) 순으로, 평균값은 3.97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사회재난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문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동의함 78명(38.2%), 매우 동의함 69명(33.8%), 보통 51명(25.0%), 동의하지 않음 5명(2.5%), 전혀 동의하지 않음 1명(0.5%) 순으로, 평균값은 4.02로 나타났다.

3. 국제적 공조 체제 빈도분석

국제적 공조 체제의 설문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의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국제적 공조 체제 빈도분석 결과

문항	설문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합계		
1	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국제적 공조 체제가 반영되어 있다.	0 (0.0)	8 (3.9)	74 (36.3)	77 (37.7)	45 (22.1)	204 (100.0)	3.78	0.834
2	실시간으로 테러 관련 정보 취합의 강화가 필요하다.	1 (0.5)	2 (1.0)	47 (23.0)	98 (48.0)	56 (27.5)	204 (100.0)	4.01	0.769
3	테러리스트의 인터넷상 선동·모집에 국제적 공조 체제가 필요하다.	1 (0.5)	6 (2.9)	48 (23.5)	90 (44.1)	59 (28.9)	204 (100.0)	3.98	0.830
4	항공 및 국경보안 분야의 국제적 공조 체제가 필요하다.	1 (0.5)	4 (2.0)	41 (20.1)	98 (48.0)	60 (29.4)	204 (100.0)	4.04	0.787
5	국제협력기구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3 (1.5)	11 (5.4)	51 (25.0)	88 (43.1)	51 (25.0)	204 (100.0)	3.85	0.911

“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국제적 공조 체제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설문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동의함 77명(37.7%), 보통 74명(36.3%), 매우 동의함 45명(22.1%), 동의하지 않음 8명(3.9%) 순으로, 평균값은 3.78로 나타났다.

“실시간으로 테러 관련 정보 취합의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설문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동의함 98명(48.0%), 매우 동의함 56명(27.5%), 보통 47명(23.0%), 동의하지 않음 2명(1.0%), 전혀 동의하지 않음 1명(0.5%)

순으로, 평균값은 4.01로 나타났다.

“테러리스트의 인터넷상 선동·모집에 국제적 공조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설문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동의함 90명(44.1%), 매우 동의함 59명(28.9%), 보통 48명(23.5%), 동의하지 않음 6명(2.9%), 전혀 동의하지 않음 1명(0.5%) 순으로, 평균값은 3.98로 나타났다.

“항공 및 국경보안 분야의 국제적 공조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설문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동의함 98명(48.0%), 매우 동의함 60명(29.4%), 보통 41명(20.1%), 동의하지 않음 4명(2.0%), 전혀 동의하지 않음 1명(0.5%) 순으로, 평균값은 4.04로 나타났다.

“국제협력기구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설문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동의함 88명(43.1%), 매우 동의함 51명(25.0%), 보통 51명(25.0%), 동의하지 않음 11명(5.4%), 전혀 동의하지 않음 3명(1.5%) 순으로, 평균값은 3.85로 나타났다.

4.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평균 비교 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연령, 소속, 경력, 학력을 통제변수로 하여 「테러방지법」과 국제적 공조 체제의 동의 정도에 대한 평균 비교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성별의 경우 <표 2>와 같이 모든 설문 응답자가 남성으로서 202명(99.0), 무응답 2명(1.0)으로 성별간 평균 비교가 무의미하기에 통제변수로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 소속, 경력, 학력에 따른 「테러방지법」과 국제적 공조 체제 개선 방안의 제변인들의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연령, 소속의 경우 「테러방지법」과 국제적 공조 체제의 개선 방안 변

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역의 경우 「테러방지법」의 개선 방안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제적 공조 체제의 개선 방안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역의 경우 「테러방지법」의 개선 방안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제적 공조 체제의 개선 방안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대학교졸 이상의 평균값이 전문대졸의 평균값보다 큰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평균 비교 분석

구분		「테러방지법」		국제적 공조 체제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연령	20대	3,8429	0,69701	3,8343	0,74287
	30대	3,9527	0,67605	3,8976	0,73585
	40대	4,0385	0,62969	4,1385	0,60724
	50대 이상	4,2273	0,73276	4,0545	0,67582
	F값(P)	1,416(0,239)		1,703(0,168)	
소속	경찰	3,9534	0,70440	3,9186	0,78707
	해양경찰	3,9688	0,65829	3,9850	0,64496
	소방	3,9107	0,69322	3,8730	0,73905
	군	3,9462	0,67996	3,9307	0,71623
	F값(P)	0,132(0,876)		0,440(0,645)	

구분		「테러방지법」		국제적 공조 체제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경력	5년 미만	3.8611	0.67625	3.8089	0.69146
	5~10년 미만	3.8958	0.69055	3.9148	0.80527
	10~15년 미만	4.1917	0.71070	4.2200	0.65884
	15년 이상	4.0962	0.57370	4.0846	0.57459
	F값(F)	2.336(0.075)		2.989(0.032)*	
	사후검증(Scheffe)			-	
학력	고졸 이하	4.0060	0.68100	3.9735	0.69125
	전문대졸	3.7384	0.63239	3.8037	0.76675
	대학교졸 이상	4.0383	0.70551	3.9645	0.70736
	F값(F)	3.449(0.034)*		1.056(0.350)	
	사후검증(Scheffe)	전문대졸<대학교졸 이상			

* p<.05, ** p<.01

5. 시사점 및 함의

1) 「테러방지법」

<표 3>, <표 6>을 살펴보면 「테러방지법」의 법령 체계 및 형식에 관한 논의보다 내용 및 기능에 관해 동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최근 사회재난 등 일상생활에서 안전 관리 의식의 상승으로 인해 「테러방지법」과 공공안전 부문과의 혼돈이 발생함에 따라 이의 관계에 대한 명확화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테러 개념의 목적을

명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테러의 개념을 사회재난의 공공안전까지 범주를 확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은 테러의 개념 범주와 역할 및 기능에 대해 협의의 테러 범위를 한정 짓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권보호관과 대테러 조정 통제기관에 관한 역할과 권한의 강화를 통해 대테러 기능 및 역할 등의 강화 및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에 따라 향후 「테러방지법」 개정 시 이를 참고로 한 적절한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테러방지법」 및 관련 하위 법령의 체계 정비 등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이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가 아닌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6〉 「테러방지법」 동의 정도 우선순위

문항	설문	평균	순위
1	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3.91	7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관련 하위 법령의 규정을 통일화해야 한다.	3.90	8
3	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테러 개념의 목적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3.94	5
4	테러단체 지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	3.95	4
5	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북한 테러행위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3.92	6
6	대테러 조정 통제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3.97	2
7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3.97	2
8	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사회재난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02	1

<표 6>을 통해 「테러방지법」의 개선 방안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학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대졸업자들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개정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제적 공조 체제

<표 4>, <표 7>을 살펴보면 국제적 공조 체제의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으나, 협력 및 거버넌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항공 및 국경 보안에 대한 국제적 공조¹⁵⁾와 실시간 테러 관련 정보 취합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공 및 국경 보안, 실시간 테러 관련 정보 취합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제적 공조 체제와 관련한 법제 및 체계적 부문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국제적 공조 체제 동의 정도 우선순위

문항	설문	평균	순위
1	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국제적 공조 체제가 반영되어 있다.	3.78	5
2	실시간으로 테러 관련 정보 취합의 강화가 필요하다.	4.01	2

15) 본 조사는 경찰·해양경찰·군·소방의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한바 국제적 공조 체제와 관련한 응답자 가운데 항공 및 국경보안 분야 근무자들의 설문 참여는 배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및 국경보안 분야의 국제적 공조 체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다.

문항	설문	평균	순위
3	테러리스트의 인터넷상 선동·모집에 국제적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3.98	3
4	항공 및 국경보안 분야의 국제적 공조 체제가 필요하다.	4.04	1
5	국제협력기구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3.85	4

<표 7>을 통해 국제적 공조 체제의 개선 방안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경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이 높을수록 국제적 공조 체제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인 '테러'가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삶의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등은 필수적이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국제적 공조 체제는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대테러시스템의 정책 마련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 및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상 성별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과 비중 등을 고려한 성비의 적절한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력의 경우 10

년 미만이 144명(70.6%)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경력이 높은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인사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방지법」과 관련하여 법령 체계 및 형식에 관한 논의보다 내용 및 기능에 관해 동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인권보호관과 대테러 조정 통제기관에 관한 역할과 권한의 강화를 통해 대테러 기능 및 역할 등의 강화 및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에 따라 향후 「테러방지법」 개정 시 이를 참고로 한 적절한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제적 공조 체제의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 및 국경 보안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실시간 테러 관련 정보 취합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로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경찰특공대(인천·대전)·해양경찰특공대(인천)·군 대테러특수임무대(대전·충북),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한 소방 테러대응구조대(경기·충남)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기에 공무원 신분으로 인한 답변의 편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 성별에 대한 응답비율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과제이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해서 발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문접수 : 2019. 4. 7, 심사개시 : 2019. 4. 9, 게재확정 : 2019. 5. 9.〉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경찰청, 경찰백서, 2017.

2. 논 문

박주혁·박진희, “국내 대테러법안의 쟁점과 기본 방향 -외국의 테러방지법 비교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치안정책연구소, 2015.

박호현·김종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18권 제3호, 한국경찰학회, 2016.

양승돈·오봉욱,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실태 및 국제사회의 공조방안”, 한국테러학회보, 제8권 제4호, 한국테러학회, 2015.

오경식, “한국의 테러방지법제의 분석과 개선방안”, 국가정보연구, 제9권 제2호, 한국국가정보학회, 2016.

유영현·김종길,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대테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한국테러학회보, 제9권 제4호, 한국테러학회, 2016.

윤민우·윤해성, “미국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법집행 및 정보활동에 대한 사례 연구”, 가천법학, 제8권 제4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이만종, “IS이후 국제테러정세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비”, 한국테러학회보, 제10권 제3호, 한국테러학회, 2017.

이주락·최연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효과적 운용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테러학회보, 제10권 제3호, 한국테러학회, 2017.

임승찬, 테러방지법과 국가 테러대응체계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한희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 16권 제4호(통권 제64호), 한국법학회, 2016.

3. 기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타법개정 2018. 4. 17, 법률 제 15608호)

<https://www.police.go.kr/files/infodata/200135/2017/2017061.pdf>

II. 외국 문헌

1. 단행본

Katja LH Samuel, *The OIC, The UN, and Counter-terrorism Law-Making*, 2013.

< ABSTRACT >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Act on Anti-terroris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Kwon, Jeong-Hoon

This research has been providing fundamental resources in order to establish and reinforce national counter terrorism operation system. With regarding to mitigation and response to terrorism incidents, the first counter terrorism responders such as police, coast guard, fire fighter and military play a significant role under domestic 「Act on Anti-terrorism」. Under the counter terrorism operation system, as matter of fact, the first counter terrorism responders recogn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nations is critical in the process of national counter terrorism. Through the result of their recognition, interrelation between domestic 「Act on Anti-terroris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preminent characteristics which are following below.

First, the first counter terrorism responders are mostly male. Because of socio-statistic balance in the field, it is required the ratio of sex should be equally distributed on the job. From the statistical point of view, the responders with less than 10 years working experience are 144 persons(70.6%) of male responders in survey. Therefore, the balance of gender distribution should be considered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policy.

Secondly, the numbers of the needs as to amending 「Act on Anti-terrorism」 are high statistically. As 「Act on Anti-terrorism」 does not properly meet with law enforcement operation system in the

structure of National Contingency Management System, the statistic has shown in high on the needs of amending the law. In particular, a role player in counter terrorism human right protection and counter terrorism operation management should be adjusted to protect civil right against any infringement.

Finally,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the umbrella of international counter terrorism law has shown in the survey. Accordingly, gathering information related to terrorism activities are highly agreeable in aviation security and coast guard.

◆ **Key words** : Terrorism, Counter-Terrorism System, Act on Anti-Terrorism, International Cooperation, Worker's of Counter-Terrorism